

「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세칙」 일부개정

「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세칙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 「산업단지계획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」 ”을 “ 「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」 ”으로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 「산업단지계획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 ”을 “ 「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 ”으로 개정한다.

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산업단지 계획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」 제4조의4에 따라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위원회 구성) ①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총 30명 이내로 구성하되, 「산업단지계획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 등은 별표와 같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② (생략)</p> <p>< 신 설 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산업단지 계획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」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제2조(위원회 구성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「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6조(재검토기한)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</p>

현행	개정안
	<u>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u>